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강현삼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9월 27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제안이유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절차를 일부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절차 내용 삭제(안 제23조제2항)

- 생태·자연도 작성은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것을 기초로 관할 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 삭제

나.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2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관할 도시 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 작성의 절차를 일부 수정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 현행 조례는 지역주민과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 작성에 대한 절차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